민원 인쇄
인쇄자: 김명호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608-0935686
신청일	2026-08-23 16:43:14
신청인	김명호
신청인 구분	개인
주소	[033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15-45 1019-201(진관동, 은평뉴타운구파발) (진관동, 은평뉴타운구파발)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 누리집(홈페이지)
민원답변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유선전화	070-8770-5659
휴대전화	
전자우편	mkim1795@daum.net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서로 간의 범죄 은폐 "부당거래"로 아파트 관리비 도둑질하는 은평경찰서와 은평구청
내용	아래 민원에서 알 수 있듯이, 아파트 관리비 도둑질의 근본 원인은 대검찰청 공무원 부패 장려부(가칭, 반부패부)를 포함한 "비리 감독 기관의 공무원들이 썩어 빠졌기 때문이고 대검에서 담당자 배정 지연하며 시간만 질질 끌기에 아파트 관리비 도둑질 강력하게 척결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민원 신청한다. ========== 고소인: 김명호 피고소 기관: 은평경찰서, 은평구청 제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 [형법] 제30조(공동 정범),

제32조(종범)

국민을 위하여 서로 감시 견제하기는커녕 서로 간의 범죄 묵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위 2기관은 은평구 뉴타운 10단지-1의 관리비 도둑질 사건을(서부지검 2026형제4934호, 은평경찰서 2026-001051, 이하 "관리비 도둑질") 은폐/축소하는데 작당하였기에, 알선수재 관리비 도둑질의 공동정범 및 종범으로 고소한다.

공동정범 입증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정범 입증에 대한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요지

(1)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2) 그 의사 결합에 대한 입증은, 정황 사실들을 치밀한 관찰,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인 판단으로 밝혀야 한다는 것

따라서, 위 기관의 의사 결합, 즉 공동정범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정황 사실들의 연관성을 입증하기만 하면 된다

2. 정황 사실들과 그 연관성

(1) 서로 간의 범죄적 약점 쥐고 있는 집행 기관

가. 은평경찰서는 [주차장법] 및 [불법건축물] 위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임에도 (3.24일 고소, 서부지검 2026형제7286호) 불구하고, 불법 건축물 단속기관인 은평구청은 202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은폐해 주고 있고

나. 은평구청은 관리비 도둑질에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산옥 구청 주무관은 관리비 도둑질의 공범으로(3.17일 고소) 은평경찰서에 고소된 상태.

(2) 관리비 도둑질의, "수의계약서 공개 관련 법령 위반" 조사(이하, "핵심조사")를 일치단결하여 결사적으로 거부하는 2기관

가. 2년 6개월여, 고소인이 수의계약서 관련 게시물을 올려놓은 네이버 카페(https://cafe.naver.com/eunpyeong10)의 게시물 확인은 핵심조사로서, 관리비 도둑질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100% 유죄 확정하는 것이고 그건 곧 은평구청을 범죄기관으로 낙인

	찍는 것이니 은평구청이 은평경찰서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 가만히 있겠는가? 나. 그러니 은평경찰서는 핵심조사를 위법하게 5개월여 미루며 은평구청의 감사를 기다려온 것이고 "위법 개판 감사" 발표 인용하여 "위법 개판 수사" 결과를 내겠다는 뻔한 수작인 거다. 다. 물론 당연히 4일간의 은평구청 "위법 개판 감사"(8.18-21일)에서도 핵심조사를 완강히 거부하며 일절 하지 않았다(*카페에 방문조차 하지 않았다), 고소인이 18일(오후 3-4시) 감사현장(입주자 대표회의실)에 찾아가 강력하게 핵심조사를 해야 한다며 카페 주소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3. 결론: 2기관이 합심하여 핵심조사 거부함으로써, "서로 간의 범죄 은폐 알선"을 주고받은 행위로 알선수재 공동정범인 것. 그리고 관리비 도둑질의 종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세금으로 월급 받아 처먹는 종년놈들의 기관들이 서로 간의 범죄 비호 "부당거래"로 아파트 관리비 도둑질 방조하고 있는 거야. * 기록으로 남길 뿐, 고소인은 기대하지 않는다, 이 사건이 법대로 해결될 거라고는. 왜냐하면, 대검찰청 "공무원 부패 장려 부장" 주민철을 비롯한 검사년놈들이 썩어 빠지고 죄다 돌대가리들이거든. 대다수가 아파트에 사는 그 검사년놈들도 관리비 사기 당하는 주제에 "묻지마 불기소 처분"하며 "지 발등 내려 찍는" 돌대가리들이란 말이다. 자세한 건 ⇒ https://seokgung.com/eunpyung10/corrupt9x.htm
첨부 파일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경찰청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서부경찰서 수사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608-1156372
접수일	2026-08-28 14:40:55
담당자(연락처)	김정희 (02-335-9566)
처리예정일	2026-09-16 23:59:59 1차 연장 기간: 7 일, 종료예정일시 : (변경전) 2026-09-07 23:59, (변경후) 2026-09-16 23:59

	- 사유 : 사실관계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부득이 처리기한을 연장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장결정일 : 2026-09-02 15:57:17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통지일	2026-09-09 16:33:28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한 민원(신청번호 1AA-2608-0935686)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은평경찰서와 은평구청이 아파트 관리비 관련 사건 처리과정에서 범죄를 묵인·방조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관련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귀하의 의혹과 주장 외에 공무원 등이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범죄에 사전공모·가담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범죄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등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단순히 기관의 업무처리 결과가 귀하의 주장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공모·방조 등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범죄사실 및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내용을 검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서부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위 김정희(☏ 02-335-956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민원신청서. 끝.
첨부 파일	

만족도 결과

질문	답변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이해 부족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이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질문	답변

한마디 더

이정희, 아파트 관리비 도둑질 공범년에게

그러면 그렇지.
경찰청 부설준으로부터 너같은 하급 따까리한테 이첩할 때부터 알아봤다
인용한 판례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이해도 못할 너같은 돌머리가 뭘 수사하겠냐?

사실관계 확인한답시고 처리기간 연장하더니 사실관계는 확인했냐?

사실관계 확인했으면,
민원내용에 깔끔하고 간결한 설명한 논리에 의하여, 은평경찰서와 은평구청이 "서로 간의 범죄 묵인 이익" 보고 있는다는 사실을 100% 입증된 건데, 뭔? 금품수수니 뭐니 헛소리하고 자빠졌냐?

이정희 같은 이런 돌머리 경찰들이 수사한다고 설치고 있으니 개돼지 천국답다